

회비 규정

제정 2020. 6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고창군체육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규약 제4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의 부과 및 징수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비 구분)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1. 회원단체 연회비 2. 이사회비 3. 기타 찬조금

제3조(회비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회원단체 연회비” 라 함은 본회 규약에 의거 회원단체에서 매 회계년도 마다 본회에 납부해야 할 회비를 말한다.
- ② “이사회비” 라 함은 본회 부회장, 이사가 매 회계연도 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- ③ “기타 찬조금” 라 함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단체, 동호인 등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4조(적용의 범위) 회비를 부과하는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단체 : 본회 규약 제5조에 의거 가입 승인된 단체
2. 이사회비 : 본회 규약 제27조에 의거 선출, 선임된 임원 (감사제외)

제5조(회비납부의 의무) 임원, 회원단체,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회비규정 제7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비의 부과) ① 임원, 회원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회비의 부과 기준표는 “별표 제1호” 와 같다.

② 회원단체, 이사회비는 이사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회비의 징수방법) ① 연회비, 이사회비는 매년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 말까지 회비를 분납할 수 있다.

제8조(회비의 수납) ① 회비의 납부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현금 또는 우편환 등으로도 체육회 사무처에 납부할 수 있다.

제9조(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) ① 회원단체 또는 본회 임원이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, 자격정지,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말일을 기준하여 본회 임원 및 회원단체의 장은 본회 규약 및 제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모든 직위에서 해임 처리한다.

제10조(회비의 관리) ① 회비는 특별회계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당 회계년도 종료 후 잔액예산은 다음 회계년도로 귀속한다. 다만,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으로 둘 수 있다.

③ 전항의 기금 또는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
④ 회비는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유지하고,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 (제정 2020. 6.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호】

회비 부과 기준표

부과대상		연 회 비	비 고
임 원	회 장	3,000,000원 이상	-
	부 회 장	1,000,000원 이상	-
	이 사	300,000원	-
회원단체 (읍면체육회, 종목별단체)		300,000원	-